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4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채현일 · 장철민 · 진선미
이재관 · 조승래 · 정준호
노종면 · 한민수 · 이상식
신정훈 · 문진석 · 양부남
박정현 의원(13인)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

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 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 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호).
- 마.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4호).
- 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전달·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을 “재발급”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姓)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경매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2. 제2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이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이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세대원의 성명 표기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때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2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민등록증등”을 “주민등록증등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나 주민등록증등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신분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주민등록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주민등록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8의4. 주민등록증등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8의5.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주민등록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1.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8호의3·제8호의4·제8호의5·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

제39조 본문 중 “제4호의2·제5호·제6호·제8호·제8호의2”를 “제5호·제6호·제8호·제8호의3·제8호의4·제8호의5·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신설>

② -----

-----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姓)만을 표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경매 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 2. 제2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이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 ④ (생 략)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

④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이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세대원의 성명 표기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
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생략)

<신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삭제>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현행과 같음)

4.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때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2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벌칙) ① -----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 7의2.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 7의2. (현행과 같음)

8. -----주민등록증등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나 주민등록증등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신분증등”이라 한다)-----

<삭제>

8의3. 주민등록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주민등록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8의4. 주민등록증등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